

전주천(국가)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

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정 보 공 개 결 과 서

2018. 09.



국 토 교 통 부

익산지방국토관리청

제1장 계획의 개요

1.1 계획의 개요

- 계 획 명 : 전주천권역(전주천)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
- 위 치 : 전주천권역 내 전주천(국가하천 구간)
- 계 획 시 행 자 : 익산지방국토관리청
- 승 인 기 관 : 익산지방국토관리청
- 계 획 범 위

< 표 1-1 > 계획하천 현황

하천명	등급	시점(상류)	종점(하류)	연장(km)
전주천	국가	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삼천(지방하천) 합류점	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량동 만경강(국가하천) 합류점	7.00

가. 하천기본계획 수립방향

- 전주천(국가하천) 구간내 치수시설물, 이수시설물 및 기타시설물 등 기존시설물의 현황을 현지 조사 및 관련기관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으며,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설치계획 및 정비 방향 등을 계획함.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은 다음과 같음.
 - 치수, 이수, 환경이 조화로운 하천정비 및 관리 계획 수립
 - 기후변화 또는 이상기후를 고려한 홍수량, 홍수위 등을 결정, 안전한 하천계획 수립
 - 관리주체 및 지역주민을 고려한 시설물 분석 등 바람직한 하천관리계획 수립

나. 시설물설치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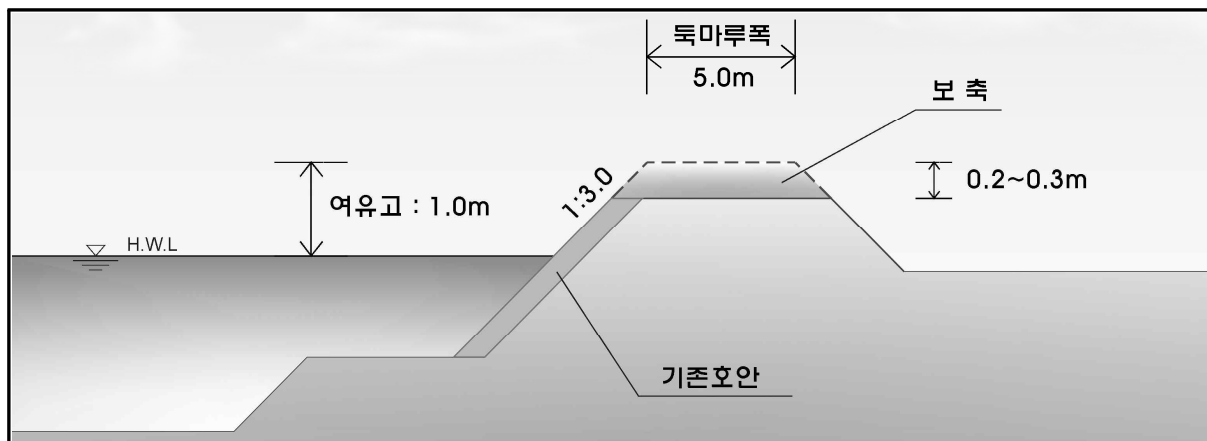
- 홍수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, 유수의 원활한 소통 등 하도의 흐름을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주요 검토지구에 대해 하천의 상황, 수리·수문 조건, 지구현황, 토지이용현황,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.

1) 축제 및 보축

- 기존 제방선형을 유지하면서, 제방 여유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기준을 확보하는 보 축계획을 수립함. 보축구간은 여유고를 확보하도록 기존 제방선형에 1:3.0 경사를 적용하여 계획함(1개소, 443m).

< 표 1-2 > 계획하천 보축계획

하천명	제방명	안별	지구명	제방구간 (No.)	단면계획						
					연장 (m)	평균 축제고 (m)	둑마루폭 (m)	사면경사		호안형식	표준 단면
								제외측	제내측		
전주천	송천제	우	보축1지구	7+63~12+61	443	0.20	5.0 이상	1:3	1:3	줄때 (제내지)	A (보축)
(국가)	소 계				443						
	합 계				443						



(그림 1-1) 보축지구 표준횡단면도

2) 교량 계획

- 계획하천내 시설차운영중인 교량 6개소에 대해 능력검토를 실시한 결과, 계획하천 6개 교량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, 상위계획에 따른 의견 수렴에 따라 유지관리용 교량 1개소 신설계획을 수립함.

< 표 1-3 > 계획하천 교량 계획

하천명	교 량 명	측점 (No)	교량연장			경간장			형하여유고				계획
			계획 하폭 (m)	현 하폭 (m)	검토 결과	소요 연장 (m)	현재 (m)	검토 결과	계 획 홍수위 (EL.m)	상관 하부 (EL.m)	여유고 (m)	검토 결과	
전주천 (국가)	(신)전주천교	0+61.5	223.5	223.5	OK	20.0	45.0	OK	11.82	16.02	1.0	OK	존치
	유지관리용 교량	2+5	222.0	222.0	OK	20.0	31.4~33.0	OK	11.88	-	1.0	OK	신설
	미산교	15+98.5	200.3	200.3	OK	20.0	25.0	OK	14.25	15.35	1.0	OK	존치
	전주철교	27+55	205.6	205.6	OK	20.0	30.0	OK	15.51	17.30	1.0	OK	존치
	전주천교	28+28	197.9	197.9	OK	20.0	22.0	OK	15.63	18.05	1.0	OK	존치
	신평교	46+31	200.5	200.5	OK	20.0	40.0	OK	18.05	19.15	1.0	OK	존치
	추천대교	57+15	150.0	150.0	OK	20.0	30.0	OK	19.48	20.79	1.0	OK	존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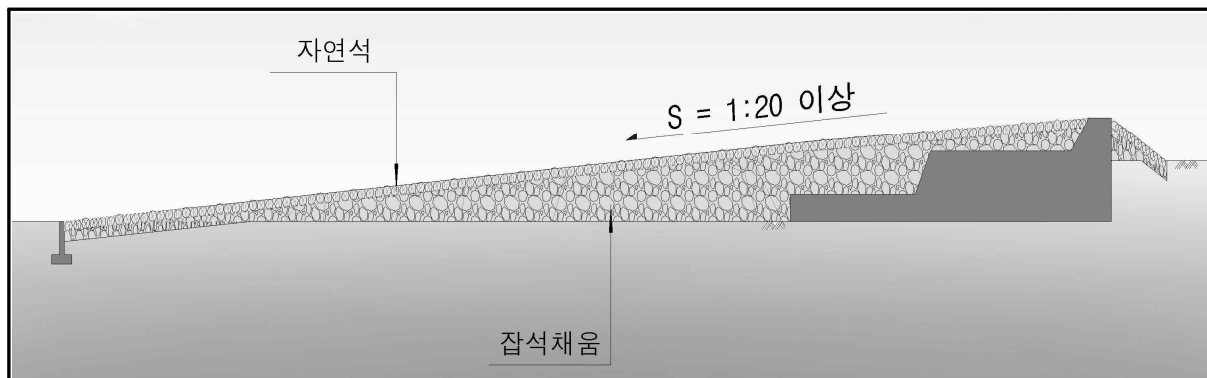
3) 보 및 낙차공 계획

가) 보 및 낙차공

- 보 및 낙차공의 능력검토 결과, 대부분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어도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어 경사여울형 자연형 보로 개량토록 계획함.

< 표 1-4 > 계획하천 보 및 낙차공 계획

하천명	구조물명칭	형식	측점(No.)	연장	검토결과					개량계획	비고
					정단폭	하단폭	물받이	바닥보호공	경사		
전주천	화전보	콘크리트	7+63	150.0	N.G	N.G	N.G	N.G	N.G	경사여울형	군보
(국가)	이성보	콘크리트	21+17	176.0	N.G	N.G	N.G	N.G	N.G	경사여울형	
	신계보	콘크리트	32+26	163.0	N.G	O.K	N.G	N.G	N.G	경사여울형	
	신평보	콘크리트	48+16	218.5	N.G	O.K	O.K	N.G	N.G	경사여울형	
	금학보	콘크리트	66+74	135.0	N.G	N.G	O.K	N.G	N.G	경사여울형	



(그림 1-2) 보 및 낙차공 예시도(안)



(그림 1-3) 보 개량방안 예시도

나) 어도 계획

- 기존보 및 낙차공 시설물은 어도가 없거나, 어도의 설치 위치 및 형식 등이 적절하지 않아 어류 소상에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어도 계획(하도중심부, 상류측 배치)을 수립·제시함.

< 표 1-5 > 계획하천 어도 설치계획

하천명	측점	구조물명	어도유무	어도 계획	어도계획위치	어도 형식	비고
전주천 (국가)	7+63	화전보	O(중앙부)	어도 개량	중앙/전면	자연형 여울식	상향식 (안)
	21+17	이정보	X	어도 신설	중앙/전면	자연형 여울식	
	32+26	신계보	O(중앙부)	어도 개량	중앙/전면	자연형 여울식	
	48+16	신평보	O(중앙부)	어도 개량	중앙/전면	자연형 여울식	
	66+74	금학보	X	어도 신설	중앙/전면	자연형 여울식	

4) 배수시설물 계획

- 계획하천에 위치한 배수시설물 27개소에 대하여 능력검토를 실시하였으며, 18개소는 존치, 9개소는 재가설하는 계획을 수립함.

< 표 1-6 > 배수시설물 계획

구조물명	기존규모 (B, D)	측점 (No.)	안별	집수 면적 (km ²)	검토	계획규모 (B, D)	구분	비고 (형식)	계획구분
신감배수문	B-3.0x2.5x1	24+05	좌	1.100	부족	B-3.5x3.5x1	재가설	암거	①
동산배수암거	B-4.0x3.2x3	28+30	좌	1.822	충분	-	존치	-	
팔복1호배수통관	D-1,200	31+89	좌	0.048	충분	-	존치	-	
팔복2호배수통관	D-1,200	31+92	좌	0.057	충분	-	존치	-	
팔복배수문	B-1.5x1.5x1	32+08	좌	0.195	충분	-	존치	-	
덕진배수문	B-2.0x2.0x1	41+98	좌	0.426	충분	-	존치	-	
팔복3호배수통관	D-1,200	50+52	좌	0.153	부족	B-1.5x1.5x1	재가설	암거	①
신상배수통관	D-800	56+36	좌	0.192	부족	B-1.5x1.5x1	재가설	암거	①
팔복배수암거	B-1.0x1.0x1	57+27	좌	0.024	충분	B-1.5x1.5x1	재가설	암거	②
매화배수문	D-600	61+75	좌	0.552	부족	B-2.5x2.5x2	재가설	암거	①, ②
월평배수문	B-2.0x2.2x2	12+59	우	3.959	부족	B-3.0x2.5x3	재가설	암거	①
전미배수문	B-1.8x1.4x2	19+06	우	0.142	충분	-	존치	-	
전주환경사업소 방류수문	B-2.5x2.5x1	19+57	우	0.129	충분	-	존치	-	
송천1호배수문	B-3.0x1.5x1	24+23	우	0.122	충분	-	존치	-	
송천2호배수문	B-3.0x2.2x2	31+71	우	3.064	부족	B-3.5x2.5x3	재가설	암거	①

< 표 계속 > 배수시설물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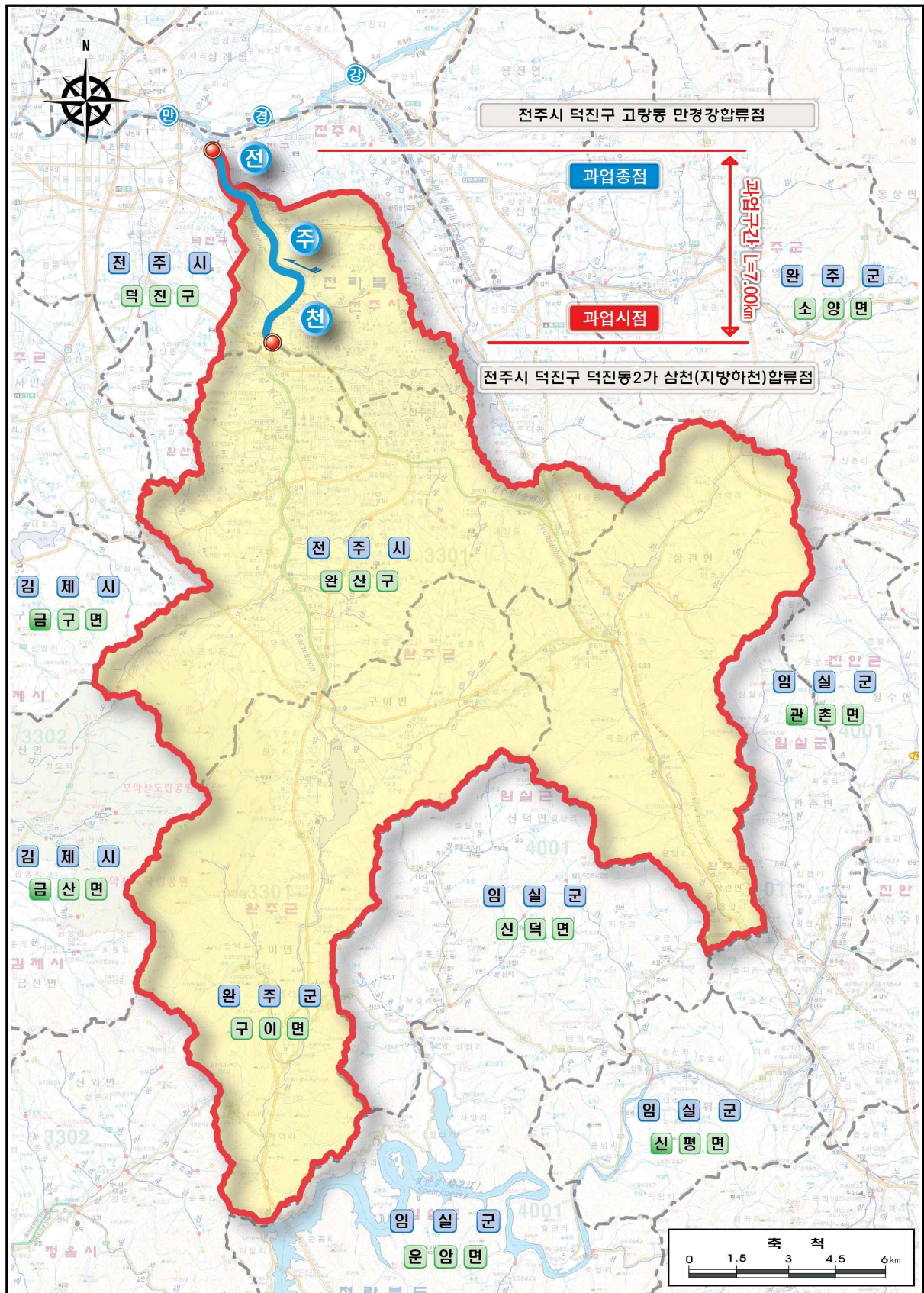
구조물명	기준규모 (B, D)	측점 (No.)	안별	집수 면적 (km ²)	검토	계획규모 (B, D)	구분	비고 (형식)	계획구분
송천3호배수문	B-2.0x2.0x1	33+25	우	0.085	충분	—	존치	—	
와룡배수문	B-3.0x2.0x1	35+27	우	0.278	충분	—	존치	—	
한양배수통관	D-1,200	44+64	우	0.069	충분	—	존치	—	
서호1호배수통관	D-1,000	48+07	우	0.080	충분	—	존치	—	
서호2호배수통관	D-1,100	48+43	우	0.084	충분	—	존치	—	
송천4호배수문	B-1.8x1.8x1		우	0.060	충분	—	존치	—	
송천배수암거	B-2.5x2.0x2 B-2.5x3.0x3	52+70	우	4.882	부족	B-3.0x3.5x2 B-3.0x3.5x3	재가설	암거	①
진일1호배수통관	D-600	56+48	우	0.092	부족	D-1,200x1	재가설	통관	①, ②
가리배수암거	B-1.5x1.5x1	57+58	우	0.155	충분	—	존치	—	
하가리배수암거	B-1.5x1.5x1	59+01	우	0.033	충분	—	존치	—	
덕일배수암거	B-1.5x1.5x1	59+81	우	0.175	충분	—	존치	—	
하가배수암거	B-2.0x2.0x1	66+50	우	0.271	충분	—	존치	—	
합 계	존치 18개소, 재가설 9개소								

주) 1. 기존 및 계획규모에서 배수암거 및 배수문(B)의 경우 B(m)×H(m)×연, 통관(D)D(mm)×연

2. 계획구분 ①의 경우 소요단면 부족, ②의 경우 최소규격 미달

1.2 계획의 기대효과

- 수리·수문 특성변화를 고려한 하천의 관리, 운영을 합리적·체계적 수립
- 주변 하천의 관리, 이용, 보전, 개발,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의 개선을 도모
- 하천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이·치수, 환경측면 등을 고려한 하천관리 기본 방향 수립
-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살리며, 지역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하천환경 조성
- 하천변과 유역의 자연적, 사회적 특성 및 자연보전, 친수기능을 고려한 공간기능 설정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개선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



(그림 1-4) 계획하천 위치도

제2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

2.1 주민의견수렴 개요

-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시 「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, 15조」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·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함.

< 표 2-1 >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

구 분	실시근거법	실시내용
공람·공고내용 게시	환경영향평가법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	○ 신문공고(한국일보 및 전민일보) ○ 정보통신망 게시 —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
주민설명회 개최	환경영향평가법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	○ 2016년 6월 10일 주민설명회 진행(팔복동 주민센터)
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	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	○ 협의기관의 장 : 새만금지방환경청장 ○ 승인기관의 장 : 익산지방국토관리청 ○ 관계기관의 장 : 전북도청, 전주시

2.2 의견수렴 방법

-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에 대한 공람·공고는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」에 의거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과에 공람·공고 내용을 게시하고 해당지역 공람장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을 비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함.
 - 공람기간 : 2016년 05월 31일 ~ 2016년 06월 23일(20일간)
 - 공람장소 :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, 전북도청 건설교통국 항만하천과, 전주시청 생태도시국 도로하천과
 - 주민의견 제출방법 : 공람장소 내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하여 서면제출
 - 주민의견 제출기간 : 2016년 5월 31일 ~ 2016년 6월 30일
 -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람 공고를 실시 :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,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게재

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 - 97호

전주천권역(전주천)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

전주천권역(전주천)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, 제15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 및 설명회개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6년 05월 31일
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

1. 용역명 :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용역
2. 계획규모 : 전주천권역 중 전주천(국가하천) 하천기본계획
3. 위치 및 사업개요

하천명	등급	시점(상류)	종점(하류)	연장(km)	사업개요
전주천	국가	전북 전주시 삼천동 삼천(지방하천) 합류점	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량동 만경강(국가하천) 합류점	7.00	보축 443m 보 재가설 5개소

4. 사업시행자 :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
5. 공람 장소 및 기간
- 가. 공람장소 :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(☎ 063-850-9324)
전북도청 건설교통국 항만하천과 (☎ 063-280-3644)
전주시청 생태도시국 도로하천과 (☎ 063-281-2873)
- 나. 공람기간 : 2016. 05. 31 ~ 2016. 06. 23.

6.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(안)

구분	등급	개최일시	장소	비고
전주천	국가	2016년 6월 10일 14:00~15:00	팔복동 주민센터 (지하1층 다목적실)	

7. 주민의견서 제출
- 가. 제출기간: 2016. 05. 31 ~ 06. 30.
- 나.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기재하여 제출

8. 비고

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본 공람은 최종 결성고시 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설치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(그림 2-1)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문

익산시방국토관리청

국토교통부 : Skemap : 어린이마당 : English

정부3.0 정보공개 · 국민마당 · 국토지식정보 · **알림마당** · 민원마당 · 우리청소개

공지사항 · 국토관리청공고 · 사업 입찰안내 · 국토관리청 보도자료 · 홍보자료실 · 보도자료 · 인사/채용 · 사전규격공고 · 법령자료

익산시방국토관리청 에 오신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!
IKSAN REGIONAL CONSTRUCTION MANAGEMENT ADMINISTRATION

알림마당

공지사항
국토관리청공고
사업 입찰안내
국토관리청 보도자료
홍보자료실
보도자료
인사/채용
사전규격공고
법령자료

통합검색 [검색]

HOME > 알림마당 > 국토관리청공고

국토관리청공고

제목	전주천권역(전주천)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		
분야	공고		
담당부서	하천계획과	작성자	한병주
전화번호	063-650-9324		
등록일	2016-05-30	조회	38
첨부파일	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.hwp, hwp		

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,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"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작성을 위한 구간을 전주천(국가하천) 하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5월 31일
익산시방국토관리청장

QUICK MENU

화면크기
인내하기
아이디/비밀번호
블로그
트위터
페이스북

TOP

국토교통 정보시스템

익산시방국토관리청

EIASS

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

(주)한국종합기술 · 토그아름 · 개인정보수정 · 사이트맵 · 도움말 · ENGLISH

사업초회 및 정보입력 · 협의통계 · 평가작성도우미 · 국민참여 · 건강영향평가

사업초회 및 정보입력

평가정보입력

평가신청서 작성내용 입력
전략환경영향평가
소규모환경영향평가
환경영향평가
사후환경조사
사전환경성검토
협의내용 이행

평가정보조회

전체목록
전략환경영향평가
소규모환경영향평가
환경영향평가
사후환경조사서
사전환경성검토

평가정보입력 - 전략환경영향평가

사업번호	JJ20160090		
사업명	전주천권역(전주천) 하천기본계획		
사업등록유형	종 사업		
결론서 접수일	2016.06.01		
업무담당자 정보	협의기관: 새만금지방관리청 담당부서: 하천계획과 전화번호: 063-238-8882	담당자: 박미경 E-Mail: emvbk@korea.kr 팩스번호: 063-238-8079	
평가서 공개유형 여부	공개		
사전입지성질 분류	중		
결정내용 연계	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		
결론서 작성자정보	소속: (주)한국종합기술 성명: (주)한국종합기술 직소번호: 02-2049-5312	전화번호: 02-2049-5314 E-Mail: leesh@kecc.co.kr	

전략환경평가협의사업 기본정보

사업 위치 구분	선형사업
사업 위치	* 선형 * 점선 * 시점: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삼천(지정하천)입류점 * 종점: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고령동 민강(국가하천)입류점

7m

확 100%

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

(그림 2-2)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(정보통신망)

제3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

3.1 주민의견 수렴 결과
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·공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나, 주민설명회 당시 1개의 의견을 수렴함.

< 표 3-1 > 주민의견 수렴 결과

구 분	의견제출자	주요의견	조치내용	비고
1	김○○	○금학보~추천대교 사이 보행자 및 자전거가 이동할 수 있도록 구조물 설치 또는 수위를 낮추어 주기 바람.	○주민의견을 반영하여, 보 및 낙차공 개량시 보행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함	반영 (전주시)

3.2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

-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」에 의거하여 관계기관(전북도청, 새만금지방환경청, 전주시)의 의견을 수렴하였음.

< 표 3-2 > 관계기관 의견수렴

구 분	검토의견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 환경하천과	1. 총괄 ○본 계획은 전주천권역 전주천(국가하천)에 대한 하천장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, 평가서 작성시 각 항목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제시하여야 함.	○전략환경영향평가(본안) 작성시 각 항목별 검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제시하였음	-
	2.세부 검토내용 ○동식물상 -하천 내 서식동물의 이동을 단절시키는 불필요한 보, 낙차공 등 구조물은 가능한 억제토록 계획하여야 하며,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공법(여울형) 등을 적용하여 어류이동 수생태계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	○동식물상 -수생태계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하천구조물계획을 지양하고, 불가피한 설치 및 개량시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계획·제시하였음	반영 p.2-8~10 p.10-85 ~89
	○수질 -계획하천이 위치한 전주시 일대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으로 전주A유역(목표수질: BOD 5.9mg/L)에 속함. 따라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수질오염총량협의를 완료하여야 함.	○수질 -수질오염총량협의를 완료하여 「10.14 수환경의 보전」 편에 제시하였음	반영 p.10-199 ~200

< 표 계속 > 관계기관 의견수렴

구 분	검토의견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 하천과	○ 기타 - 계획하천 주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- 독마루폭은 기존도로폭 이상으로 계획하여 차량운행에 이상 없도록 해야함.	○ 기타 -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들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- 본 하천기본 계획시 차량운행에 이상없도록 계획함	반영 p.2-7 p.8-3~10
새만금지방 환경청	1. 총괄	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작성시 각 항목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(동식물상, 수환경, 대기환경 등)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·제시하였음	-
	○ 동 구간은 만경강,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상류 하천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강구하는 등 하류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유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	○ 수질오염원을 제시하였으며, 수질오염저감대책을 강구하여 하류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유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·제시함	반영 p.10-145 ~213
	○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제출 시에는 수립된 지역주민의 의견과 반영 결과를 해당 항목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 중 부득이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.	○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의 의견과 반영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제시하였으며, 의견 중 부득이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의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	반영 p.8-10 ~15
	2. 세부 검토내용		
	가. 자연환경의 보전	가. 자연환경의 보전	반영
	○ 특정식물 서식역 및 상류역의 호안 식생을 보전하고, 수달 및 삵 등 이동성이 높은 법정 보호종의 교란을 최소화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	○ 보전할 가치가 있는 특정식물 서식역 및 상류 지역의 호안식생의 경우, 공사로 인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수달, 삵 등 이동성이 높은 법정보호종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 및 정비계획을 수립 제시하였음	p.10-82 ~84 p.10-96 ~99
	○ 법적보호종 및 주요 서식지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보전대책을 선수립(※)하여 하도정비 시 생태계훼손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. ※ 「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매뉴얼 구축」 보고서(KEI, 2010) 40-46쪽 참조	○ 법적보호종 및 주요 서식지에 대한 훼손이 적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「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매뉴얼 구축」 보고서(KEI, 2010)를 참조하여 법적보호종 및 주요 서식지 훼손시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수립하였음	반영 p.10-96 ~99

< 표 계속 > 관계기관 의견수렴

구 분	검토의견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새만금지방 환경청	○절성토, 나대지 형성 등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태교란종 및 귀화식물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거 및 관리방안(기계적, 생물적, 환경적 방안 등)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확산 방지 모니터링 계획을 강구하여야 함. -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현황을 도면에 표시하고, 제거 및 관리방안을 강구	○현지조사시 확인된 생태교란 생물의 분포현황을 도면에 표시하였으며, 확산되지 않도록 제거 및 관리방안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제시하였음 - 또한, 확산방지 모니터링 계획을 강구제시하였음	반영 p.10-16 ~17 p.10-92 ~95
	○하천정비로 인한 이질적인 경관형성을 최소화하고, 홍수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방축조, 동물의 이동이 가능한 호안경사 유지 등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계획을 강구 제시하여야 함. - 호안계획이 수립된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의 상세 현황을 작성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● 기존 호안 설치현황(사진 등) 및 구체적인 호안정비계획을 제시하되, 주변 자연환경과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친환경소재 등 적용 방안 강구 ● 제방 설치 유무, 제방 설치에 의해 보호되는 시설물 및 토지이용 현황 등 제방 설치 사유 (인근 지역 홍수 피해 현황)를 제시	○전주천 권역 하천 주변이 도심지, 농경지 등 다양한 환경이 분포하는 바, 동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였음. - 계획하천에 호안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음 ● 기존 호안 현황 및 호안정비계획 수립시 주변환경과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불필요한 공사를 지양하였으며, 현재의 하천 지형 및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였음. ● 제방 설치 유무, 제방 설치로 인한 영향 등 제방 설치 사유를 제시하였음	반영 p.10-118 ~125 p.10-274 ~275
	○사업시행으로 인해 오염물질(토사 등)이 유출되어 하류 수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. - 집중강우를 대비하여 토사유출량 원단위는 최대값인 400m³/ha·년으로 설정하여 침사지를 계획	○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보 개량시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물막이, 오탐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제시하였음 - 토사유출 원단위는 400m³/ha·년 적용	반영 p.10-201 ~203 p.10-144
	○동 계획구간은 만경강,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상류하천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강구하는 등 하류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제시하여야 함.	○과업하천은 도심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변으로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합류식관거로 인한 월류 등으로 비점오염 등 오염원의 유입이 내재되어 있으며, 「전주 노후산단 및 주변공업지역 재생사업」 등 과업하천과 연계되는 사업의 분류식 관거계획을 제시하고 하천 내 수생식물 식재 등을 통한 비점오염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	반영 p.10-209 ~212
	○동 구간은 전주천의 최하류부로 상류의 공단 배수로, 시가지 등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, 오폐수 처리수, 미처리 생활하수 등이 장기간 유입되어 하천내 퇴적토가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, 면밀한 저질조사를 실시하고 퇴적토 제거 등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. ※토양오염 조사시 시료채취의 위치, 깊이, 규모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	○금회 문헌조사를 통해 저질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으며, 퇴적토 제거 방안 등의 저감대책을 검토·제시하였음	반영 p.10-136 ~139 p.10-213

< 표 계속 > 관계기관 의견수렴

구 분	검토의견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새만금지방 환경청	○ 하천정비를 통해 육수생물과, 양서파충류, 포유류 등의 주요 서식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대상 구간 내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사업구간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 - 수환경(특히 수생태계) 개선, 생물서식지 보전 복원 및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	○ 하천정비를 통해 육수생물과 육상동물의 주요 서식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반적인 저감대책과 서식지 교란에 대한 저감대책, 서식지 조성, 동물이동로 확보방안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음 - 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토사유출 방지 계획 및 육수동물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보 개량 방안 등을 제시함	반영 p.10-82 ~89 p.10-201 ~203
	○ 현재의 수질 및 생물다양성 현황을 토대로 목표수질, 각 하천 구간별로 생물군별 목표 지표종(육수생물, 수변식물 등)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목표달성계획을 강구제시하여야함. - 현재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(점, 비점) 유입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, 공사시운영시 하천 수질 예측 및 수질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차단(저감)할 수 있는 방안 등 저감대책을 강구 - 이용시 초기우수로 인한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	○ 하천의 현황을 토대로 목표지표종 2종(피라미, 참갈겨니)을 설정하였음 -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유입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, 공사시 하천 수질 예측 및 수질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차단(저감)할 수 있는 방안 등 저감대책을 강구하였음 - 비점오염원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음	반영 p.10-90 ~92 p.10-141 ~183 p.10-201 ~203 p.10-211 ~212
	나. 생활환경의 안정성 ○ 사업시행시 하천 주변에 인접한 정온시설별로 공사시 저감대책 전후를 비교하여 소음영향을 예측하고, 현지여건에 맞는 적극적인 저감대책을 마련·제시하여야 함. - 소음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정온시설에 대하여 추가 저감방안 및 주기적인 소음모니터링 계획 강구 • 정온시설 및 소음모니터링 지점은 층수를 표시하고, 고층 정온시설이 있는 경우 층별 예측소음도 산정 및 추가 저감방안 수립 • 가설방음패널에 의한 소음의 회절감쇠 산정 시 음원의 높이(1.2m이상), 수음점의 높이(1.5m), 음원과 가설방음패널의 거리(10m 이상으로 산정), 가설방음패널과 수음점의 거리를 명시	나. 생활환경의 안정성 ○ 사업시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 영향을 예측하고, 이에따른 저감방안을 마련·제시하였음 - 소음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정온시설에 대한 추가 저감방안 및 주기적인 소음모니터링 계획을 제시하였음 • 정온시설 및 소음모니터링 지점은 층수를 표시하고, 고층일 경우 층별 예측소음도 산정 및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• 가설방음패널에 의한 소음의 회절감쇠 산정 시 음원의 높이(1.2m이상), 수음점의 높이(1.5m), 음원과 가설방음패널의 거리(10m 이상으로 산정), 가설방음패널과 수음점의 거리를 명시하였음	반영 p.10-235 ~259
	○ 사업구간 지장물 철거 등의 과정에서 건설공사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바, 발생량 예측 및 구체적인 운반,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	○ 본 시설물 계획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수거방안, 위탁처리 방안 등을 제시함	반영 p.10-267 p.10-269

< 표 계속 > 관계기관 의견수렴

구 분	검토의견	반영여부(미반영 사유)	비 고
새만금지방 환경청	다. 사회·경제환경과의 조화성 ○계획하천에 대한 식생 등의 자연환경현황과 주변 배후지역의 규모 및 토지이용 현황, 경관의 양호성, 하천생태 현황 등을 포함한 현황분석도를 작성하고, 현황분석도와 토지이용계획도를 중첩하여 개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- 계획지구내 입지시설물, 시설물 배치계획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작성·제시하고 제원을 명시	다. 사회·경제환경과의 조화성 ○계획하천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공간관리계획도를 작성하였으며, 개발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계획평면도를 제시함 - 계획지구내 입지시설물 및 배치계획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하여 제원을 명시하였음	반영 p.2-17 ~18 p.10-279 ~290
	○친수지구의 설정은 배후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이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한정하여 최소화하여야 함. - ‘하천자연도 평가지침’등을 참조하여 등급을 평가한 근거자료를 제시 ※생태하천 복원 조사·평가 및 진단 매뉴얼 (2014.8, 환경부) 참고 - 하천자연도 3등급지역을 친수지구로 지정하였으나 비점오염원의 증가와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는 시설물의 입지를 최소화	○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친수지구의 설정을 실시하였으며, 하천자연도 평가지침 등을 참조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음 -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는 시설물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	반영 p.10-7 ~10 p.10-60 ~65 p.10-69 ~70
전주시청	○회신없음	○회신없음	-

주) 1. 비교의 반영 페이지(p.)는 “전주천(국가)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” 상의 페이지를 의미함.
2.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“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”에서 확인 가능함.

『인쇄 : 한영주 / 자료제작자 : C016-09-07 16:37:23』

한국 속의 한국, 상용화는 전라북도!

전라북도

전라북도
평년 강수량 1,173mm

수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(하천계획과장)

(경유) 제국 전주천(국가하천) 하천기본계획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의견 제출

1. 하천계획과-3078(2016.05.31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「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응적응계획」을 검토하고 관련하여 요청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의견을 불일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검토의견 1부. 끝.

전라북도

★주무관 : 한영주 연락처 : 010-2070-8111 회상일

주소 : 익산시 관동로 100-1 (호국동3가), 전라북도 / http://www.jeonbuk.go.kr

전화번호 : 063-280-3044 팩스번호 : 063-280-2889 / phjeon@jeonbuk.go.kr / 대국민 공개

본서 제작자-4898 1/1

전주천권역(전주천)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검토의견(안)

□ 개 요

- 용역명 : 전주천권역(전주천)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
- 하천명 : 전주천

하천명	등급	시도(상류)	중간(하류)	연장(km)
전주천	국가	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동로 삼천(지방하천) 합류점	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동로 삼천(국가하천) 합류점	7.00

□ 검토의견

I. 총괄

- 본 계획은 전주천권역 전주천(국가하천)에 대한 하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, 평가서 작성 시 각 항목별 검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·제시하여야 함.

II. 세부 검토내용

- 동·식물상
 - 하천 내 서식동물의 이동을 단절시키는 불투명한 보, 낙차공 등 구조물은 가능한 역도둑 계획하여야 하며,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공법(여울형)등을 적용하여 어류이동 수생태계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·제시하여야 함.
- 수질
 - 계획하천에 위치한 전주시 일대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으로 전주A류역(목포수출:900 5.9㎥/일)에 속함.
 - 따라서 규장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수질오염총량제를 편입하여야 함.
- 기타
 - 계획하천 주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.
 - 북미루복은 기존도로폭 이상으로 계획하여 차광은행에 이상 도로폭 해대함.

전라북도 건설교통국 환경정책과 인준

『인쇄 : 한영주 / 자료제작자 : C016-09-07 16:37:23』

한국 속의 한국, 상용화는 전라북도!

전라북도

전라북도
평년 강수량 1,173mm

수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(하천계획과장)

(경유) 제국 전주천(국가하천) 하천기본계획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의견 제출

1. 하천계획과-3078(2016.05.31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「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응적응계획」을 검토하고 관련하여 요청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의견을 불일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검토의견 1부. 끝.

전라북도

★주무관 : 한영주 연락처 : 010-2070-8111 회상일

주소 : 익산시 관동로 100-1 (호국동3가), 전라북도 / http://www.jeonbuk.go.kr

전화번호 : 063-280-3044 팩스번호 : 063-280-2889 / phjeon@jeonbuk.go.kr / 대국민 공개

본서 제작자-4898 1/1

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검토의견

[전주천권역(전주천) 하천기본계획]

— < 사 업 개 요 — (사업번호 : JJ20160090)

- 위 치 :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(지방하천) 합류점 — 덕진구 관동로 안경길(국가하천)합류점
- 규 모 : 7.0km
- 주요사업 : 호안 및 보속(0.443km), 보 및 낙차공(자연형 5개소 재가설) 등
- 사업시행자 / 승인기관 : 익산지방국토관리청 / 익산지방국토관리청
- 협의 근거 :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'별표2' ※ 「하천법」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

I. 총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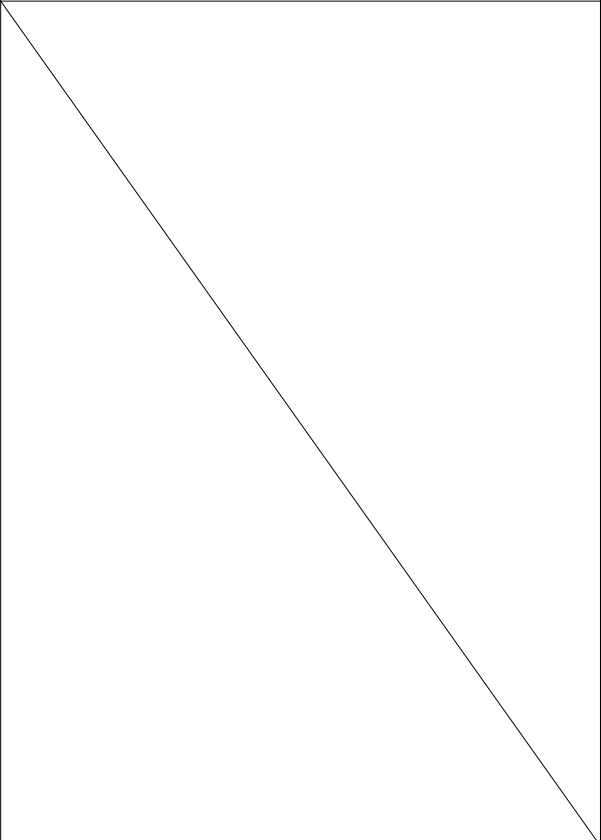
- 본 계획은 국가하천인 전주천에 대한 하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, 평가서 작성 시 각 항목별 검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·제시하여야 함.
- 동 구간은 만경강,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상류하천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강구하는 등 하류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유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제출 시에는 수렴된 지역주민의 의견과 반영 결과를 해당 항목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 중 부득이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.

II. 세부 검토내용

가. 자연환경의 보전

- 1 -

(그림 3-1) 관계기관 검토의견

○ 특정식물 서식역 및 상류역의 호안 식생을 보전하고, 수달 및 살 등 이동성이 높은 법정보호종의 교란을 최소화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 ○ 법적 보호종 및 주요 서식지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보전대책을 선수립하여 하도정비 시 생태계훼손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. ※ 「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매뉴얼 구축」 보고서(KEI, 2010) 42~46쪽 참조 ○ 절·성토, 나대지 형성 등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태교란종 및 귀화식물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거 및 관리방안(기계적, 생물적, 환경적 방안 등)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확산방지 모니터링계획을 강구하여야 함. ※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현황을 도면에 표시하고, 제거 및 관리 방안을 강구 ○ 하천정비로 인한 이질적인 경관형성을 최소화하고, 홍수에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방축조, 동물의 이동이 가능한 호안경사 유지 등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강구·제시하여야 함. ※ 호안계획이 수립된 하천구간에 대해 하천의 상세 현황을 작성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※ 기존 호안 설치현황(사진 등) 및 구체적인 호안정비계획을 제시하되, 주변 자연환경과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친환경경계 등 적용방안 강구 ※ 제방 설치 유무, 제방 설치에 의해 보호되는 시설물 및 토지이용 현황 등 제방 설치 사유(인근 지역 홍수 피해 현황)를 제시 ○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오염물질(토사 등)이 유출되어 하류 수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. ※ 집중강우를 대비하여 토사유출량 원단위는 최대값인 400m³/ha·년으로 설정하여 청사지를 계획	○ 동 계획구간은 만경강,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상류하천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강구하는 등 하류의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·제시하여야 함. ○ 동 구간은 전주천의 최하류부로 상류의 공단배수로, 시가지 등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, 오·폐수 처리수, 미처리 생활하수 등이 장기간 유입되어 하천내 퇴적토가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, 면밀한 저절조사를 실시하고 퇴적토 제거 등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. ※ 토양오염 조사시 시료채취의 위치, 깊이, 규모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○ 하천정비를 통해 육수생물과, 양서류·파충류, 포유류 등의 주요 서식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대상 구간 내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사업구간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. ※ 수환경(특히 수생태계) 개선, 생물서식지 보전, 복원 및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○ 현재의 수질 및 생물다양성 현황을 토대로 목표수질, 각 하천 구간별로 생물군별 목표지표종(육수생물, 수변식물 등)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목표달성계획을 강구·제시하여야 함. ※ 현재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(점, 비점) 유입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, 공사시·운영시 하천 수질 예측 및 수질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차단(저감)할 수 있는 방안 등 저감대책을 강구 ※ 이용시 초기우수로 인한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나. 생활환경의 안정성 ○ 사업시행시 하천 주변에 인접한 정온시설별부 공사시 저감대책 전·후를 비교하여 소음영향을 예측하고, 현지여건에 맞는 적극적인 저감대책을 마련·제시하여야 함.
※ 소음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정온시설에 대하여 추가 저감방안 및 주기적인 소음모니터링 계획 강구 ※ 정온시설 및 소음모니터링 저점온 측수를 표시하고, 고출 정온시설이 있는 경우 층별 예측소음도 산정 및 추가 저감방안 수립 ※ 가설방음패널에 의한 소음의 최절감의 산정 시 음원의 높이(1.2m 이상), 수용점의 높이(1.5m), 음원과 가설방음패널의 거리(10m 이상으로 산정), 가설방음패널과 수용점의 거리를 명시 ○ 사업구간 저장물 철거 등의 과정에서 건설공사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바, 발생량예측 및 구체적인 운반, 처리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 다. 사회·경제환경과의 조화성 ○ 계획하천에 대한 식생 등의 자연환경현황과 주변 배후지역의 규모 및 토지이용 현황, 경관의 양호성, 하천생태 현황 등을 포함한 현황분석도를 작성하고, 현황분석도와 토지이용계획도를 중첩하여 개발 전·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※ 계획지구내 입지 시설물, 시설물 배치계획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으로 작성·제시하고 제원을 명시 ○ 친수지구의 설정은 배후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이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 되는 구간에 한정하여 최소화하여야 함. ※ ‘하천자연도 평가지침’ 등을 참조하여 등급을 평가한 근거자료를 제시 ※ 생태하천 복원 조사·평가 및 진단 매뉴얼(2014.8. 환경부) 참고 ※ 하천자연도 3등급지역을 친수지구로 지정하였으나 비점오염원의 증가와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는 시설물의 입지를 최소화	

(그림 계속) 관계기관 검토의견